

제4조(수강료)

③ 정규 강좌 등록 후 수강을 취소하고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환불 신청서, 수강취소신청서와 체류자격 변동 예정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언어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2.1., 2021.9.1.>

④ 전항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. 다만,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

⑤ 전항의 체류자격 변동 예정 상황에 따른 증빙서류와 수강료 환불 기준일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8.12.1., 2021.9.1.>

<별표> <신설 2021.9.1.>

체류자격 변동 예정 상황에 따른 증빙서류 및 환불 기준일

체류 자격 구분			증빙서류	환불기준일
체류 자격	체류 지역	수강 취소에 따른 체류자격 변동		
언어교육원 표준입학허가서를 통해 D-4 또는 C-3 사증을 발급받은 자	해외 체류 중인 자	사증 발급 후 입국하지 않아 체류자격 취소 예정인 자	출국항공권 사본	환불신청서 제출일
		출국 후 재입국을 포기하여 체류자격 취소 예정인 자		환불신청서 제출일
	국내 체류 중인 자	수업 시작 전 수강을 취소하고 출국하여 체류자격 취소 예정인 자	출국예정일이 기재된 항공권 사본	환불신청서 제출일
		수업 시작 후 수강을 취소하고 출국하여 체류자격 취소 예정인 자	출국예정일이 기재된 항공권 사본	항공권에 기재된 출국예정일
		타 대학 어학연수과정 입학을 위하여 소속 대학으로 체류자격 변경 예정인 자	입학예정 대학 표준입학허가서 사본	환불신청서 제출일
		학위과정 입학에 위하여 D-2 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 예정인 자	체류자격변경 신청 접수증 사본 또는 입학 예정 대학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등 입학 예정 대학 합격 또는 입학 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	환불신청서 제출일
		기타 체류자격으로 변경 예정인 자	체류자격변경 신청 접수증 사본	환불신청서 제출일
		그 외	기타 체류 자격 변동 예정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	환불신청서 제출일
그 외	전체		환불신청서 제출일	



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